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9. 4(수) 10:00

# 제2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65호
- 나. 제출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4. 8. 22.
- 라. 회부일자 : 2024. 8. 22.

## 2. 제안이유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3. 5. 16. 공포 및 2024. 5. 17. 시행)에 따라 “국가유산(구 문화재)”에 대한 용어 및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
  - 1) “문화재” → “국가유산”(안 제1조부터 제3조)
  - 2) “문화재” → “문화유산”(안 제4조)
  - 3) “문화재청장” → “국가유산청장”(안 제4조)
  - 4) “문화재보호구역” → “국가유산 보호구역”(안 제5조)

나. 인용조문 정비

- 1) 「문화재보호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안 제4조)
- 2)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안 제5조)

4. 관계법령

- 「국가유산기본법」 제1조 및 제3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3. 5. 16. 공포 및 2024. 5. 17. 시행)에 따라 “국가유산(구 문화재)”에 대한 용어 및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국가유산 체제 전환

-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를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유산(遺産)’으로 명칭을 변경 확장
- 유네스코 유산체계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분류체계 재정립

현행 용어		변경 용어	관련법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자연유산 「자연유산법」(제정)	
	기념물	사적지 등 명승, 천연기념물 등	무형유산 「무형유산법」(개정)
	무형문화재		

○ 주요개정사항

- 명칭변경 : “문화재” →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으로 변경
- 인용조문 현행화
  - ▶ 「문화재보호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조례 정비대상 : 총 5건

연번	구분	자치법규명	조항	개정내용	소관부서
1	조례 (5)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2조	· 문화재 → 국가유산	민원감사담당관
2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 문화재 → 국가유산	부 동 산 정 보 과
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1	· 문화재 → 국가유산	도 시 계 획 과
4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3조	· 「문화재보호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문화재 → 문화유산	공 원 녹 지 과
			제14조	· 「문화재보호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문화재청장 → 국가유산청장	
5	구세 감면 조례	제2조	· 문화재 → 국가유산 ·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문화재보호구역 → 국가유산 보호구역	세 무 1 과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거래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